



NEXUS BRIEF · NB-2026-104 · 채무자보호·연체채권

조건부 대손인정, 예정일의 채권 포기를 확인합니다

은행·보험 5 천만원, 저축은행·여전사 등 3 천만원 이하 채권에 붙은 조건과 예외

개정 세칙과 금융위원회 시행자료를 대조해 예정일의 포기 조건, 예외와 매각 후 책임을 확인했습니다.

발행일·호수	NB-2026-104 · 2026-10-16	상태	발행본
읽는 시간	7 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10-15	원문 확인일	2026-10-15

연구소의 판단

세무상 손실을 먼저 인정받는 대신, 정해진 시효 예정일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연구소는 그 날짜와 예외 사유가 채권 매각 뒤에도 유지되는지가 제도의 효과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확인할 정보는 대상 여부, 예정일과 포기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01 확정된 사실

2026 년 10 월 7 일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 10 월 12 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청·보고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을 도입했습니다.[1][2]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시행	2026.10.12	10.7 개정
첫 적용	2026 년 4 분기 신청	금융위 발표
은행·보험	5 천만원 이하	일반은행·특수은행·보험회사
기타 대상회사	3 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등
자체상각	1 천만원 이하	기존 자체상각 인정 방식에 조건 부가

금액은 신청·보고 당시 채권 잔액이며 미수금·미수이자·가지급금 등은 제외합니다. 국내 개인사업자 채권도 개인금융채권에 포함됩니다. 자체상각은 추정손실로 분류된 가계대출·신용카드채권·카드자산·할부금융이 대상입니다.[1]

02 왜 이런 구조인가

대손인정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을 세법상 손실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기존에는 추정손실 채권에 대해 금감원의 대손인정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손실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손실 인정과 장기 추심을 함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2][3]

민법상 채무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실제 완성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세칙의 조건은 신청·보고에 적은 예정일의 채권 포기입니다. 금융위는 최초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됐다면 채권을 포기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효중단만으로 이 조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세칙상 예외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1][2][4]

금융위에 따르면 8 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매각계약서에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적어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의무 이행을 점검·보고해야 합니다. 채권을 팔았다는 이유로 조건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2]

03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새 조건부 대손인정의 대상 채권을 가진 채무자입니다. 연체기간이나 남은 대출금만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국 발표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세척의 보험회사 대출 범위에서는 보험약관대출이 제외됩니다. 여러 대출이 있거나 담보·보증이 얹혀 있다면 해당 채권의 분류와 적용 단위를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1][2]

은행의 한 채권이 신청 시점에 잔액 4,800 만원, 미수이자 600 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합계는 5,400 만원이지만 금액기준에 쓰는 잔액은 미수이자를 뺀 4,800 만원입니다. 5 천만원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조건부 대손인정이나 채무 소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분류, 신청·보고, 예정일과 예외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1][10]

3 천만원·5 천만원은 적용 금액의 기준이고, 1 천만원은 기존 자체상각 규정에 연결된 기준입니다. 일괄 감면액이나 감면율이 아닙니다. 개정 부칙은 시행 이후 조건부 대손인정을 받는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합니다. 과거에 상각된 모든 채권이 이번 시행일에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읽을 근거는 없습니다.[1]

04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채권을 포기하지 않을 예외가 남았습니다

첫째, 채권을 포기하지 않을 예외가 남았습니다. 세척 제 3 조의 3 은 예정일에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융위가 든 사례는 은닉재산 발견,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한 시효중단, 신복위·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입니다. 은닉재산만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1][2]

02 상환능력 판단기준과 증빙은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둘째, 상환능력 판단기준과 증빙은 해당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함께 개정된 업권별 모범기준의 재심사 예로, 시효연장 후 3 년이 지나면 상환능력을 재평가하고 능력이 없으면 도래 전 중도 포기하는 방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업권의 일률적 법정기한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 기준과 회사별 적용 결과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1][2]

03 금융회사 확인이 법원 대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셋째, 조건부 대손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원 대응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청구·압류·승인 등 경과를 따져야 합니다. 채권자의 면제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4][5][7][8]

05 지금 할 일

국민

1. 원채권 금융회사에 대상 채권인지, 신청·보고일과 그때의 잔액이 얼마인지, 적혀 있는 시효완성 예정일이 언제인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처음 빌린 날짜만으로 예정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예정일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으면 적용한 예외와 판단 근거를 요청합니다. 매각된 채권이라면 현재 채권자와 원채권 금융회사에 예정일·의무의 승계 여부를 함께 묻습니다.
3. 법원 서류는 별도로 대응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 주 이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와 납입내역을 갖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등에서 신속히 상담받습니다.[7][8][9]
4. 소액을 갚거나 확인서에 서명할 때도 법적 효과를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전 승인은 중단 사유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5 년 7 월 24 일, 완성 후 채무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일부 변제만으로 자동 포기됐다고 단정하지도, 어떤 서명도 영향이 없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기존 채무조정 납부를 이 글만 보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4][6]

대상회사

1. 신청·보고의 잔액, 예정일, 예외 판단자료와 실제 포기 처리를 연결해 관리합니다. 자체상각 채권과 매각채권도 점검 대상에서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고객에게 대상 여부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창구를 알리고, 양도계약의 조건 승계와 양수인의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국

1. 조건부 대손인정 건수·금액과 예정일 도래 후 포기·예외 처리 결과를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와 매각 이후 이행 결과가 있어야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예정일의 포기 조건이 실제 처리로 이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예정일 도래 채권의 포기·예외 처리 결과와 매각 후 이행 실적입니다.

A 예정일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과 예정일을 식별하고 예외 근거를 기록하면 채무자도 자신의 채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예외와 매각 후 이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가 시행되도 채무자가 자기 채권의 처리 결과를 알기 어려워집니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상각 총액보다 예정일 도래 채권의 포기 결과, 예외별 내역과 양수인 점검자료를 봅니다.

함께 읽을 것

넥서스 브리프 | 연체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면 그 빛은 사라지나 · 제 18 호

넥서스 브리프 | 빛을 나눠 갚는 중에 채권이 팔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 제 60 호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10 건

확인 항목 10 건 · 1 차 자료 9 건 · 파생 계산 1 건

추적 예정 · 4 분기 적용 이후

1 차는 발표기관·법령·판례 원문, 2 차는 원문을 요약한 보도·해설, 파생은 계산입니다.

[1] 1 차 · 개인사업자 포함, 잔액 산식, 5 천만·3 천만·1 천만원 기준, 예외·적용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 2 조·제 3 조·제 3 조의 2·제 3 조의 3·부칙. 2026.10.7 개정, 10.12 시행 · 원문 확인 2026-10-15 [원문 열기](#)

[2] 1 차 · 4 분기 신청, 무담보 범위, 조건 승계·점검, 재심사 예시

금융위원회,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 2026.10.12. 가이드라인·모범규준 설명은 이 발표 범위 · 원문 확인 2026-10-15 [원문 열기](#)

[3] 1 차 · 종전 세무처리와 반복 추심 구조

금융위원회, 대손인정 세칙 개정 사전예고, 2026.6.10. 당시 계획과 실제 시행일은 구별 · 원문 확인 2026-10-15 [원문 열기](#)

근거와 검증 계속

[4] 1 차·청구·압류·승인의 시효중단 효과

민법 제 168 조·원문 확인 2026-10-15 [원문 열기](#)

[5] 1 차·채권자의 면제 의사표시와 채권 소멸

민법 제 506 조·원문 확인 2026-10-15 [원문 열기](#)

[6] 1 차·시효 완성 후 승인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를 추정하던 법리 변경

대법원 2025.7.24 선고 2023 다 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공식 설명·원문 확인 2026-10-15 [원문 열기](#)

[7] 1 차·지급명령 송달 후 2 주 이의신청 기간

민사소송법 제 470 조·원문 확인 2026-10-15 [원문 열기](#)

[8] 1 차·이의신청이 없는 지급명령의 확정 효력

민사소송법 제 474 조·원문 확인 2026-10-15 [원문 열기](#)

[9] 1 차·법률상담 전화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톡톡이 이용안내·원문 확인 2026-10-15 [원문 열기](#)

[10] 파생·가정한 은행 채권의 금액기준 잔액 4,800 만원

4,800 만원+미수이자 600 만원=5,400 만원. 미수이자를 뺀 기준 잔액은 4,800 만원. 실제 감면 사례가 아님·원문 확인 2026-10-15 [계산식](#)

추적 예정

2026 년 4 분기 적용 이후 조건부 대손인정 실적, 예정일 도래 채권의 처리 결과, 예외 판단과 양수인 이행점검 자료가 공개되면 이 글의 판단을 다시 점검합니다.

정정 이력

2026 년 10 월 16 일 최초 발행.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연구소의 분석으로 당국·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채권의 시효 완성·면제·변제의무나 소송 대응에 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계약·납입·재판 기록에 따른 확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성 ·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